

# 2020년 경남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 공급을 위한 포럼

일시 : 2020년 5월 29일(금) 14:00~16:00

주최 :  경상남도

주관 :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후원 :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참가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합니다.

# 2020년

# 경남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 공급을 위한 포럼

- 민과 관의 협력 모델을 위하여 -

일시 및 장소

2020년 5월 29일(금) 14:00~16:00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317호

시간	주요 내용
발제	14:00~14:05 ▶ 사회 :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김기형 팀장 ▶ 포럼 안내 및 내빈소개
	14:05~14:08 ▶ 인사말 :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정철효 이사장
	14:08~14:10 ▶ 강연 연사 소개
	14:10~15:00 ▶ 주제 발표 발제 1. 경남사회가치금융의 현황, 기능과 역할 -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김진수 대표이사 발제 2. 경남도 사회적경제기금 관련 조례 내용과 운용 방향 - 경남사회적경제추진단 장재혁 단장
15:00~15:10	휴식시간
토론	15:10~16:00 ▶ 사회 :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정원각 센터장 ▶ 지정토론 - 구영민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 - 김유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이보연 비플러스 부대표 -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실장 ▶ 질의응답
	16:00 ▶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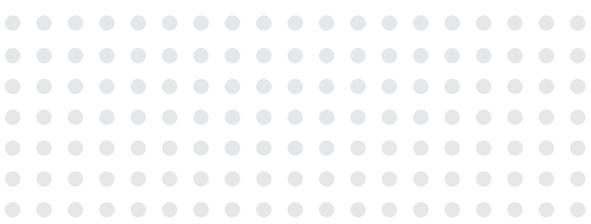
주최 경상남도

주관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후원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 (주)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소개

김진수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대표이사)

## (주)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소개

김진수 대표이사(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 목차

#### 1. 조직 개요

- 1) 조직 명칭과 법인 성격
- 2) 참여자 현황
- 3) 설립목적(정관)
- 4) 사업 내용(정관)

#### 2. 설립 배경과 필요성

- 1) 당사자 조직들의 요구
- 2) 경남의 사회적경제 단계에서의 자금 조달 기관의 필요성
- 3)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하 '연대기금')의 지역 파트너

#### 3. 역할

- 1) 경남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 2) 경남의 사회적경제 당사자 협의체들의 성장 지원
- 3) 정부, 경남도의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과 사업 유치와 안착 촉매

#### 4. 자금 조달 방안

- 1) 자금 조달의 방안
- 2) 자기 자본
- 3) 자조 기금
- 4) 차입 자금
- 5) 프로젝트 자금

#### 5. 경남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당사자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

- 1) 경남의 자금 중개 조직 설립을 위해 외부의 연계, 연대 조직과 협력
- 2) 방법

#### 6. 논의 과정

- 1) 경남에서의 논의

- 2) 경남과 전국에서 포럼 등 정책
- 3)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논의

7. (주)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의 특징

- 1) 금융지원 대상
- 2) 금융지원 대상 확보 전략
- 3) 금융상품의 차별성 :

8. 대출 상품과 프로세스

- 1) 대출상품 안내
- 2) 대출 프로세스
- 3) 상환과 사후 관리

## 1. 조직개요

1) 조직 명칭과 법인 성격 ; 주식회사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사단(또는 재단)법인, 협동조합, 대부업 검토 했었음(덧붙임1. 참조))

2) 참여자 현황

(1) 경남의 4개 사회적경제 당사자 협의체 중에 경남마을기업협회,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경남자활기업협회들이 추천하는 법인과 개인

(2) 그 외의 사회적경제 기업, 개별 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3) 경남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들

(4) 그 외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관심 있는 개인, 법인들

(5) 설립 자본금 ; 5천1백만 원

(6) 창립 총회 ; 2019년 12월 20일

(7) 법인등기 ; 2019년 12월 27일

(8)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록 ; 2020년 1월 28일

(9) 개업연월일 : 2020년 2월 3일 / 사업자등록 발급 : 2020년 2월 4일

3) 설립목적(정관) - 경남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조직들의 활성화를 위해 자금 대출, 자금 중개, 교육 지원, 컨설팅, 연구, 자문, 출판 등의 용역서비스업 등을 한다.

4) 사업 내용(정관)

(1) 경상남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조직에 자금 대출

(2) 경상남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조직에 자금 중개(수행기관)

(3) 경상남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조직에 경상남도의 관련 기금 등의 중개

(4) 경상남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조직에 중앙 정부 관련 정책 자금, 기금 중개

(5) 경상남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조직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자금, 기금 중개

(6) 경상남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조직에 교육 지원

(7) 경상남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조직에 컨설팅

(8) 경상남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조직 등에 관한 연구, 자문, 출판 등의 용역서비스업

(9) 경상남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조직 등에 자조기금 설립을 위한 컨설팅, 교육, 자문 등 용역서비스 제공과 타인이 설립한 기금의 위탁운영업

(10)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전대업 및 관리업에 관한 업무

(1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2. 설립 배경과 필요성

### 1) 당사자 조직들의 요구

- (1) 2018년 경남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위한 당사자 기업 설문조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57.0%(163명)가 ‘인건비 및 운영자금 부족’이라고 응답함.
- (2) 이에 대한 해결로 응답자의 반인 49.8% 자금 지원으로 응답하였고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은 7.2%에 머물렀다. 이는 그 동안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자립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관행을 드러내는 것이었음.
- (3) 지원이 아닌 융자, 대출의 요구는 7.2%에 머물렀지만 이 응답 기업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사회적경제 조직이 성장할 수 있음.
- (4) 2019년 8월 사회적경제 기금 조례 제정을 위해 대출 수요 조사를 했는데 49개의 기업에서 2020년 105억 원, 2021년 75억 원, 2022년 41억 원 등 223억 원으로 응답

<표1> 경남 사회적경제 기업 자금 대출 수요(2019년 8월 조사)

	3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합계	22,260,000,000	10,450,000,000	7,740,000,000	4,070,000,000
프로젝트 자금(태양광 등)	5,710,000,000	1,560,000,000	2,150,000,000	2,000,000,000
건물(부동산 등) 매입이나 보증금 자금	940,000,000	940,000,000		
시설, 장비, 인건비 등 운전	15,610,000,000	7,950,000,000	5,590,000,000	2,070,000,000

### (5) 2020년 자금 수요

- 위 조사에서 2020년 한해의 자금 수요는 약 104억5천만 원으로 응답하였음.
- 이 가운데 태양광 설치와 같은 프로젝트 사업 자금이 15억6천만 원이고 건물 매입이나 보증금 등으로 필요한 자금은 9억4천만 원 그리고 시설, 장비, 인건비로 필요한 자금이 79억5천만 원이었음.
- 여기서 시설, 장비를 제외한 인건비, 자재비 등의 운영비는 12억 원 정도로 추정됨.
- 자금 상환 기간은 평균 6.3%로 장기 대출을 원하고 있음.

<표2> 2020년 필요 자금 중에 인건비, 운영비, 자재비

법인명	요청 금액	이자(%)	평균 상환기간	비고
20개의 법인	1,209,500,000	0 - 7.0	6.3년	위의 <표1>중에 2020년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자재비 중심 산정 자금
평균	60,000,000			
- 태양광 설치, 사업장 보증금 등의 사업 제외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중심으로 산정 - 인건비, 운영비 외에 장비가 포함된 금액은 50%만 반영 - 인건비, 운영비 외에 시설비, 장비가 포함된 금액은 30%만 반영				

2) 경남의 사회적경제 단계에서의 자금 조달 기관의 필요성

(1) 경남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경남은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 숫자, 종사자, 매출 등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

<표3>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현황

구 분(시행)	사회적기업(2007년)	협동조합 <sup>1)</sup> (2012년)	자활기업(2012년)	마을기업(2010년)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목적	취약계층 고용 창출, 서비스 제공	조합원 권익 향상, 지역 사회 공헌	수급권자 등의 자활 지원	지역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근거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기초생활보장법	행안부 지침
전국개수('18末)	2,122개	14,528개	1,214개	1,514개
경남개수('19末)	222개(예비포함)	712개	68개	120개

\* 농협, 수협, 신협, 생협 등 개별 특별법에 의한 8개 개별 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기업 범주에 포함

\* 1)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2) 경남에서는 스케일업이 필요한 단계 :

① 창업,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과 함께 매출 확대와 종사자 확대 등은 스케일업이 필요함.

② 경영 컨설팅을 통한 스케일업 : 스케일업은 자금 대출 등을 하면서 경영상태를 개선하는 컨설팅이 필요함. 경남의 사회적 가치 사업에 대출이 필요함.

=>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현황(2017년 기준)은 10만 명 당 사회적기업 2.51개, 마을기업 3.4개, 자활기업 3.9, 협동조합 13.7개 등으로 하위권이며 사회적기업 연매출(2017)은 전국 평균인 19억5천만 원의 반 정도인 8억8천만 원 수준임.(<표3>, <표4> 참조)

<표4> 사회적기업 평균매출액

(단위 : 백만 원, 개소)

구분	전국			경남		
	매출액(전체)	기업 당 평균 매출액	기업수	매출액(전체)	기업 당 평균 매출액	기업수
2016	2,596,322	1,582	1,641	67,329,603	874	77
2017	3,553,058	1,950	1,822	73,080,504	880	83

(3) 한국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정부 정책이 수도권에 머무는 한계를 극복

- ① **기존의 은행, 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문제** - 사회적경제 기업 특히,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인색. 원인은 출자금을 기본 자산 불인정(부채 취급), 주인 없는 조직이라는 왜곡된 인식, 경영 상태 평가 기준 차이(이익에 대한 시각 차) 등임. 자본기업 평가 기준으로 사회적경제를 평가하면 안 되는데 개선이 안 됨. - 근본적인 이유
- ② **민간의 30개 사회적경제 금융 중에 29개 수도권에 있음(2020년 2월 기준)** -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금을 공급(대출, 투자 등)하는 중개기관(금융)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대부업, 투자회사 등 30개가 있는데 모두 서울에 있음. 경남에서 설립한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를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에 있음.
- ③ **정부 정책이 비수도권에 내려오지 않음** - 정부가 사회적경제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보증료 인하, 대출 금액 확대, 이자 차액 보전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비수도권에는 전달이 거의 안 되고 있음.(사회적경제에 지원하는 신탁의 자금도 약 85%(2019년 상반기) 수도권)
- ④ **관련 업계 직원 자격의 문제** - P2P 온라인 대부업에는 은행 경력이 필요하고 중소기업법의 엑셀러레이터의 경우 직원의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벤처캐피탈 종사 경력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벤처캐피탈은 대부분 서울에 있고 비수도권에 없음. 이런 정책들이 비수도권에서는 피부로 다가오지 않음.

3)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하 '연대기금')의 지역 파트너** ; 자금 공급을 위해 민간에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2019년 1월 23일 설립하여 3천억 원을 목표로 운영 중임

- (1) **사회적경제 금융의 본질적인 대면 관계를 하는 금융기관 필요**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비수도권의 당사자 기업들에게 직접 대출, 투자에 한계가 있음. 그러므로 현장에서 대면 관계를 가지고 관리할 금융 조직이 필요함.
- (2) **매칭 자금 조달 조직 필요** ; 연대기금은 인내자본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자금과 연계하므로 연대 기금을 받으려면 지역에서 다른 자금과 연계하는 사회적경제 금융 필요

- (3) 지역 독자적인 사회적경제에 자금 공급하는 조직 육성 ; 장기적으로 지역에 사회적경제 금융 조직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업, 직원 육성해야 함.

### 3. 역할

#### 1) 경남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 (1) 이를 위한 자금 공급. 초기에는 대출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중장기적으로 투자까지
- (2)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경영을 컨설팅.
- (3)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스케일업 지원

#### 2) 경남의 사회적경제 당사자 협의체들의 성장 지원

- (1) 경남마을기업협회,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경남자활기업협회, 경남협동조합협의회 등이 자율, 자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지원 ;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 우대 금리 적용 등의 방법
- (2) 협의체들의 법인화와 자체 자조 기금 형성을 촉진
- (3) 협의체들이 자체 실무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촉진

#### 3) 정부, 경남도의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과 사업 유치와 안착 촉매

- (1) 비수도권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 자금이 성공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함
- (2) 사회적가치가 정부의 각종 사업과 정책(공공구매, 사회적 농업, 재생에너지, 사회주택 등)이 비수도권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진함.
- (3) 궁극적으로 비수도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감소, 불평등 해소, 고용 확대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

### 4. 자금 조달 방안

#### 1) 자금 조달의 방안

경남사회금융은 대부분 자금의 조달의 방법으로 자기 자본, 자조 자금, 기부, 공공 차입, 민간 차입, 프로젝트 사업비 등으로 구성함.

<표5> 경남사회금융대부 중장기 자금 조달 방안

단위 : 천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조달 금리	비고
자기자본	50,000	30,000	60,000	150,000	250,000	500,000	0	5년 후에는 P2P 자체 운영 목표
자조기금			40,000	150,000	250,000	500,000	0	주주와 달리 대출을 원하는 기업 조직
공공차입(목표)		300,000	800,000	1,500,000	2,500,000	3,000,000	0	조례 기금(조례 추진 중)
민간차입금1.(SVS)		250,000	350,000	400,000	500,000	500,000	0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차입
민간차입금2.(경남)		40,000	250,000	300,000	500,000	1,000,000	3~5%	경남 지역 자체 차입, 비플러스와 협력
기타 차입								서민금융진흥원 등 이용
프로젝트 정책 자금								태양광 발전, 사회주택 등 공공 정책자금
합 계		620,000	1,500,000	2,500,000	4,000,000	5,500,000		

- (1) 2020년 경남에서 차입을 4천만 원으로 확대(조달 이자 3%)
- (2) 2021년부터는 자조 기금 조직하여 진행
- (3) 2025년에는 온라인 P2P 가능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5억 원 목표
- (4) 2025년에 P2P가 시작된다면 자금 조달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 자기 자본

- 경남사회금융은 2019년 창업 자본금 5천1백만 원 가운데 2020년에 3천만 원을 대부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함.
- 5년 후에는 온라인 P2P를 자체적으로 하려는 목표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5억 원의 자기 자본금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매년 연차적으로 증자를 하여 2024년에는 5억 원의 자본금을 목표로 함.

### 3) 자조 기금

- 자기 자본을 늘려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총회 등의 어려움이 있음. 그러므로 별도의 자조 기금을 만들.
- 자조 기금은 일종의 대출금 규모의 기준이 될 수 있음. 자기 법인이 조성한 자조 기금의 5 ~ 10배 사이 대출 하는 등의 기준을 가질 수 있음.
- 자조 기금은 반환이 가능한 자금으로 함. 주식은 반환이 불가능하지만 자조 기금은 탈퇴할 때 반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 차입 자금

#### (1) 민간 차입 ;

- ①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 그리고 관계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여 대부 중개를 함.
  - ② 비플러스 P2P와 협력하는 차입 ; 온라인 차입을 비플러스와 협력
- #### (2) 연대 조직 차입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자금을 차입할 계획임. 초기 마중물로 차입을 하며 3 - 4년 후에는 차입 규모를 늘리지 않음. - 다른 지역 연대를 위해
- (3) 공공 차입 ; 현재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사회적경제기금조례가 제정되면 경남도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용할 계획임.
  - (4) 기타 ;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같은 기관으로부터 차입

### 5) 프로젝트 자금 ;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정책 사업(친환경재생에너지, 사회주택, 도시재생 사업 등) 자금 사용

## 5. 경남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당사자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

### 1) 경남의 자금 중개 조직 설립을 위해 외부의 연계, 연대 조직과 협력

#### (1)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 ① 연대기금 창립 전인 2018년 10월부터 경남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긴밀하게 협력함.
- ② P2P 금융 플랫폼과 경남의 금융 기관을 자본 투자, 운영 등에 대해 상호 협력
- ③ 경남의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가치 정책(사회주택, 신재생에너지, 실업극복 등)에 대해 인내 자본과 매칭 투자 역할
- ④ 중앙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사회가치 사업, 도시재생, 사회적 농업 등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지역에 연계하는 컨설팅

(2) 비플러스 ; 2016년 설립하여 지금까지 100개의 공익사업에 85억 대출, 투자  
경력

- ① P2P 금융 사업자로서 경남의 사회적 금융 기업에 플랫폼 제공
  - ②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출, 투자, 기업 관리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 전수
  - ③ 지역의 중개기관이 독자적인 사회적금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 지원
- \* ②와 ③의 역할과 방법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비플러스가 협의하여 조정함.

(3) 경남도 기금 ;

- ① 경남도의 사회적경제 기금 조례가 제정되고 기금이 조성되면 위탁 관리가 아닌 매칭 형태로 공동 대출. 위탁 관리가 되려면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함.
- ② 도민 세금으로 원금이 보전되는 대출을 중심으로 함.(기금의 목적 사업에 맞는 역할)
- ③ 특히, 도의 정책을 실현하는 사회가치 사업에 참여

2) 방법

- (1) (주)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도록 추진 ; 예비사회적기업
- (2) P2P 금융 플랫폼을 이용함.
- (3) 금융 플랫폼에 경남의 자금이 필요한 상품을 올리면 단계별 운영(P2P 경남메뉴 오픈(6개월 이상) => P2P 경남 사이트 오픈(6개월 이상) => P2P 투자플랫폼 검토)
- (4) 장기적(3년~5년)으로는 지역에서 독자적인 P2P금융을 하는 것을 목표

6. 논의 과정

1) 경남에서의 논의

- (1) 2018년 8월 경남사회적경제활성화민관추진단 출범 이후 당사자 조직 협의회, 지역 협의회, 중간지원 조직 간담회 등에서 자금 조달의 애로사항 접수
- (2) 2018년 10월 경남사회적경제활성화민관 추진단 워크숍에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금 공급할 조직 설립의 필요성 논의함.
- (3) 2018년 12월 경남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할 때 당사자 조직들의 요청
- (4) 2019년 1월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창립 때에 사업 계획으로 채택

2) 경남과 전국에서 포럼 등 정책

(1) 2018년 11월 28일 1차 포럼

① 때 : 2018년 11월 28일(수) 오후 2시 30분 ~ 5시 30분

② 곳 : 경남발전연구원 1층 세미나실

③ 제목 :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조달 방안

- 발표와 발표자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필요성과 진행 현황 발표, 김정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현 실장)

- 신나는 조합과 같은 소매금융의 역할, 노영한 팀장(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장)

(2) 2019년 5월 16일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에서 자금 조달 부분

① 때 : 2019년 5월 16일

② 곳 : 경남발전연구원 1층 세미나실

③ 제목 : 「경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중에 “사회적경제 기금”, 정원각 단장

(3) 2019년 9월 더불어민주당사회적경제 위원회

① 때 : 2019년 9월 20일 오전 10시

② 곳 : 국회의원회관

③ 제목 내용 : 정원각 경남사회적경제위원회 실무추진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과제, 장지연 실장(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사회적경제 공제 활성화 방안, 김대훈 대표(세이프넷지원센터)

- 민간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 역할 강화 방안, 문보경 금융위원장(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3)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논의

(1) 연대기금 출범 전 ; 2018년 10월 말 김정현 실장에게 정원각 단장이 설명을 들음.

(2) 출범 이후 ; 약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금융 설립 방법과 절차, 그리고 연대기금과 협력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함.

7. (주)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의 특징

1) 금융지원 대상

(1) 대출대상 기업 : 경남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2) 대출한도와 금리 : 2천만 원, 연 4~5% 고정금리(할인 조건은 별도로 반영)

(3) 대출제외

- 부채비율 400% 초과인 기업

- 정책자금 3억 원 초과하여 용자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은 서민금융

진흥원,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정부(경남도, 시군,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자금을 말함)

## 2) 금융지원 대상 확보 전략

- (1) 당사자 조직 협의체들이 추천 ; 경남마을기업협회,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경남자활기업협회 등의 대출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 추천을 받음
- (2) 중간지원조직들의 추천 : 경남광역자활센터(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경남대공동체마을사업단(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업종별 사회적경제기업 추천을 받음
- (3) 시군 중간지원센터 추천 : 거제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김해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기초 시군에 있는 지원센터들이 지역 사회 대면 관계 속에서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들 추천을 받음.
- (4) 대출을 컨설팅과 연계하는 전략 :
  - ① 사업성과가 좋지 않은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종합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자금 대출을 지원함.
  - ② 대출만 아니라 각 정책 자금 등을 연계하는 상담을 함께 하여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함.
  - ③ 아울러 투명한 경영, 회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업 전반을 분석하여 마케팅, 인사, 노무, 품질, 영업 등 적합한 컨설팅을 제공함.
  - ④ 특히, 스케일업, 통합, 협업, 컨소시엄, 분업, 아웃소싱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도록 하며 때로는 정리하는 것도 방법임을 알게 함.

## 3) 금융상품의 차별성 :

- (1)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가 일반 제도 금융과 다른 이유 ; 당사자 주도형
- (2) 경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협회, 협의회 육성을 위한 전략 ;
- (3) 제도권 금융과 다른 평가 기준 ;

\* 사회적 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성과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 사회적경제분야의 다양한 지원사업 중 선정과정에서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수준을 파악하여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표
- 이 지표는 관점별로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등으로 되어 있으며, 총 14개 지표(계량지표(65%), 비계량지표(35%))로 구성

- (4) 단기 대출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 ;

- (5) 장기대출에 대한 배려 시스템 :
- (6) 교육과 컨설팅을 함께 하는 사회적금융 상품 :
- (7)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는 사회적금융 ;

## 8. 대출 상품과 프로세스

### 1) 대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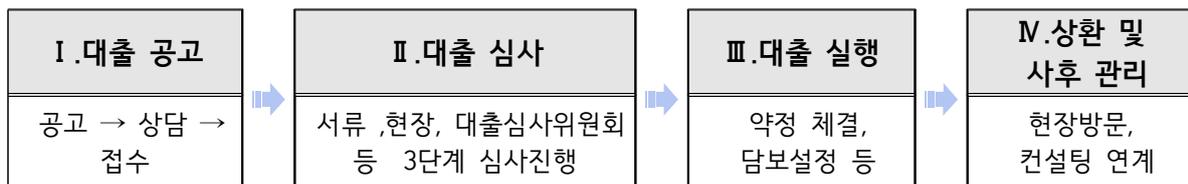
- (1)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연 4.0 ~ 4.5% 고정금리)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 방법
3개월 이내	4.0%	만기일 일시 상환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4개월부터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6개월 초과 - 12개월 이내	4.5%	(3개월 거치기간)

- (2) **(주)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와 MOU를 맺은 경남사회적경제 소속 협의회**의 추천서가 첨부되면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과 관계없이 심사를 통해 해당 금리에서 0.5% 감면 가능.
- (3) 12개월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 : 만기를 다 채우고 이자와 원금 상환이 1회도 밀리지 않고 상환했을 때 대출 기간 전체에 대해 상환 방식에 따라 지불한 이자의 0.5%(예를 들어 상환해야할 잔금에 대한 이자 4.0%를 지불했다면 3.5%만 받는 것으로 해서)를 돌려 줄 수 있음.(성실 거래자에 대한 배려)
- (4) 연체이자 : **대출 약정 이자 + 연 4%**

### 2) 대출 프로세스 ; 덧붙임2. 참조.

#### (1) 사업 진행



- (2) **대출 공고** : 신청요건, 대출금액, 대출요건상환이자, 제출서류, 공지방법 등

#### (3) 대출 심사 :

- ① 서류심사 ; 자격요건 심사, 기초 사전 평가

##### - 대출제외

ㄱ. 부채비율 400% 초과인 기업

ㄴ. 정책자금 3억 원 초과하여 융자받은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정부(경남도, 시군, 중앙정

부)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자금을 말함)

- 구비서류 : 공고문 양식 참조
- 평가표 : 자격요건심사 및 기초사전심사 내용을 포함한 평가표 작성( 양식 : 붙임 자료 03. 서류심사표 )

## ② 현장심사

- 심사대상 : 서류심사 합격한 지원신청자
- 심사자 : 2인(기초사업평가자 1인, 심사위원 1인)

## ③ 대출심사위원회

- 심사대상 : 현장실사서 보고서가 제출된 신청자
- 근거 ; 경남사회금융 운영 규정 제16조(심사), 제17조(대출심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운영
- 대출심사위원회 명단 :
  - ㄱ. 대출금액에 따라 위원회 수 조정
  - ㄴ. 구성 ; 이사 7명, 경남 협의회 회장 3명(마을, 자활, 사회적기업), 외부 관련 기관(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비플러스, 신나는 조합, 한국사회혁신금융 등) 14명

④ 대출 자금에 따른 전결 기준 : 금액에 따라 대출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진행

⑤ 대출 결정 : 심사위원의 합의로 최종 합격 여부 판정. 심사위원회는 전원 합의로 하며 3차례까지 합의를 시도하며 3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출하지 않음.

## ⑥ 대출실행 :

- 운영규정과 약관 확인
- 담보설정
- 대출약정서(대출계약서)

## 3) 상환과 사후 관리

### (1) 현장방문 모니터링 실시

### (2) 상환관리

- 대출기업 상환 이력 월 수시 관리
- 매월 25일 상환안내 문자 발송 및 연체 시 상환독려
- 연체 횟수에 따른 단계별 상환관리

### (3) 대출 후 관리

#### ① 비정기적 사후 관리 실시

-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기업 간 상생 가능성 검토
- 구매연계, 업체온라인홍보, 각종 행사 참여 유도 등 지원방법 모색
- 당사자 기업 소속 협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관리

## ② 경영지원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융자기업 대상이므로 비금융서비스로 경영컨설팅, 정부와 경남도와 해당 시군의 정책 자금 연계 지원 등을 제공
- 기업의 인사, 노무, 회계, 홍보, 마케팅, 시장조사 등 전반적인 종합 컨설팅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원함.

## ③ 재무평가 및 재무컨설팅 실시

- 연 1회 대출 이후 재무현황을 파악
- 대출 이후 재무상태 변화 내용을 평가하고 대출에 대한 효과성 검증
- 필요 또는 요청 시 재무건전성 진단을 통해 연체가능성 조기 파악 및 재무컨설팅 실시 - 경남의 중앙정부 중간지원 조직들과 협력
- 4개의 협의체와 협력하여 교육과 컨설팅 등 진행
- 재무컨설팅 실시 한 기업에 대해 「붙임3. 재무컨설팅 보고서」작성 및 기업 공유

## ④ 조직관리 컨설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의사 결정 구조에 있어서 민주적인 곳이 많은데 참여자들은 민주적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더구나 민주적 의사 결정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왜곡된 경우들이 있음. 민주적 의사 결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컨설팅.
- 민주적 운영과 경영에 대한 갈등 해소가 매우 중요함. 이에 대한 조직 진단, 구성원들의 관계 그리고 직책, 역할에 따른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컨설팅
- 총회, 감사, 이사회, 대표 등 각 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례 연구 등.

덧붙임1.

지역에 설립할 사회적 금융 조직 법인 검토 결과	
구분	내용
결론	
(1유형)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 조직의 목적사업 범위 안에서 운영 1) 자기자금 활용 투융자(자조기금/기부·출연금) 2) 정책자금 재융자(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기금) 3) SVS 도매기금 활용 투융자 4) 액셀러레이터 등록해 개인투자조합 운용 (3년 내 초기창업기업 투자) ※ 지자체기금법 개정 후, 지자체기금 위탁운영 가능하지만, 현재는 재융자 방식으로 사업
전국 대표하는 중 앙은 가능하나 광 역 개별 지역에서 는 재단 규모 자금 모급 어려움.	
(2유형) 사회적협동조합	상호부조를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틀 내 운영 1) 출자금 활용 조합원 대상 소액대출, 공제사업 (출자금의 2/3 이내 조합원 대상 대출) 2) SVS 등 30% 수준으로 참여 가능한 출자자를 확보해 대출 규모 확대 3) 조합원/비조합원 대상 투자/출자 (SVS기금 활용) 4) 액셀러레이터 등록해 개인투자조합 운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비조합원 융자 불가, 서민금융진흥원 재융자 사업 참여 불가
조합원이 아닌 일 반 사회적경제 기 업 이용 불가능하 며 자금 조달 방법 어려움.	
(3유형) 주식회사 + (예비)사회적기업	금융업 라이선스 보유, 대부업, 투자조합 결성/운용 1) 대부업 등록해 융자, P2P연계 대부업 (0.5억원) <b>⇒ 3억 원, 직원 자격 무, 금융위 등록 ⇒ 2020년부터 설립 자문 금 5억 원, 직원 자격, 금융위 등록으로 대폭 강화</b> 2) 액셀러레이터 등록해 (0.5억) 개인투자조합 운용 3) 자산운용사 등록해 투자조합 운용 (투자/융자) (7년 내 창업기업 1억, 전문투자 10억) ☞ 사회적경제조직 정체성 입증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등록.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고려해 소유/지배구조/정관 등 요건 마련
지역에서 현실적으 로 가장 가능한 방 법임.	
액셀러레이터 조건(중소기업창업지원법)	
1) 납입자본금 5천만 원 이상	
2) 상근 전문인력1)(2인 이상)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서류	
3) 창업 보육공간 확보현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1) 상근 전문인력 요건은 실질적으로 창업벤처캐피탈 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한정

덧붙임2.

## 0 사업진행 프로세스



### I 대출공고

공고문, 공지방법 확정

공고문내용 : 신청요건, 대출금액, 대출요건상환이자, 제출서류, 공지방법 등

공고문 공지 방법 : 홈페이지, 블로그, 보도자료 등

양식 : 붙임 자료 01 공고문 양식

: 붙임 자료 02 대출신청서 양식

### II 대출심사

서류심사

○ 심사대상 : 서류 접수된 신청자 전원

○ 심사내용 및 심사자

	심사자	심사항목
자격요건심사	사업담당자 1인 교차확인	- 필수서류 확인 및 기본요건(수익성,부채비율,자본잠식유무)심사 * 자격요건 탈락자의 경우 기초사전 평가 불가
기초사전평가	심사위원 중 1인 교차확인	- 사업내용 :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정의 - 재무상태 : 재무상태표의 계정별 세부 내역파악 및 신뢰성 여부 판단 - 자금조달능력 : 사업개발비,인건비 등의 지원금 또는 후원금 등 영업외 수익의 조달능력에 대한 판단 * 심사목적 : 현장실사 대상 여부의 판단과 함께 실사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점검

○ 대출제외

- 부채비율 400% 초과인 기업

- 정책자금 3억 원 초과하여 용자받은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은 서민

금융진흥원,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정부(경남도, 시군,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자금을 말함)

- 구비서류 : 붙임 자료 01 공고문 양식 참조
- 평가표 : 자격요건심사 및 기초사전심사 내용을 포함한 평가표 작성( 양식 : 붙임 자료 03. 서류심사표 )

□ 현장심사

- 심사대상 : 서류심사 합격한 지원신청자
- 심사자 : 2인(기초사업평가자 1인, 심사위원 1인)
- 심사내용
  - 신청서류 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 주 사업장 및 신규 점포 현장 점검
  - 사업 타당성 및 사업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
  - 기업대표자의 도덕성 및 전문성, 사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 신청자금 용도 및 규모에 대한 검토
- 확인서류
  - 최근 6개월 급여대장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실사자가 사전에 요청한 자료
- 합격기준
  - 현장실사 이후 대출심사위원회를 통해 적격,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판정
- 현장실사서 보고서 양식 ( 붙임 자료 04. 현장실사서 )

□ 대출심사위원회

- 심사대상 : 현장실사서 보고서가 제출된 신청자
- 근거
  - 경남사회금융 운영 규정 제16조(심사), 제17조(대출심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운영
- 대출심사위원회 명단 : 대출금액에 따라 위원회 수 조정

no	성명	직책	비고
1	김진수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대표이사	사회적기업 늘푸른자원 대표
2	곽운학	이사(비등기)	작은기업연구소 소장(IBK 근무 17년)
3	류재하	이사	경남마을기업 부회장

4	이상구	이사	경남전문가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
5	정원각	이사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상무
6	조정림	이사(비등기)	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사무국장
7	최응기	이사	사회적기업 (주)교육과비전 대표
8	구영민	경남마을기업협회 회장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
9	정철효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사회적기업 (유)하나온
10	황영임	경남자활기업협회 회장	자활기업 (유)김해늘푸른사람들 대표
11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추천자	사회적금융전문가
12		비플러스 추천자	사회적금융전문가
13		신나는조합 추천자	사회적금융전문가
14		한국사회혁신금융 추천자	사회적금융전문가

○ 심사방법

- 서류심사, 현장실사 결과를 기초로 현장실사자의 브리핑으로 사전 논의
- 신청기업 대표자(실무총괄)와의 대면심사
- 기업 대표자의 도덕성 및 전문성, 사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 합격기준

- 심사위원의 합의로 최종 합격 여부 판정. 심사위원회는 전원 합의로 하며 3차례까지 합의를 시도하며 3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출하지 않음.

○ 대출전결기준(안)

	구분	전결권자					비고
		대표이사	상임이사	위원 2인	위원 4인	위원 6인	
신규	1천만원이하		○				상임이사 전결
	1천만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	○	○			4인
	3천만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	○	○		6인
	5천만원 초과	○	○	○	○	○	8인
기한 연장	1천만원이하						
	1천만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5천만원 초과						
증액							

조건 변경	이자율변경 담보물건변경 기타						
----------	-----------------------	--	--	--	--	--	--

- 기한연장 및 조건변경 포함

### Ⅲ 대출실행

#### □ 서류 작성

- 운영규정과 약관 확인
- 담보설정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시설투자에 대한 목적으로의 대출 발생 시 해당 물  
건에 대한 근저당 설정 및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

- 대출약정서, 대출계약서 작성(통합제안) : 별첨05.06
- 대출확인서 발급 : 별첨 07

#### □ 대출실행

### Ⅳ 상환 및 사후 관리

#### □ 현장방문 모니터링 실시

- 사업담당자 1인의 현장 방문
- 분기 1회 이상 대출기업을 방문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방안 모색

#### □ 상환관리

- 대출기업 상환 이력 월 수시 관리
- 매월 25일 상환안내 문자 발송 및 연체 시 상환독려
- 연체 횟수에 따른 단계별 상환관리

연체 1회	유선관리 : 연체사유 파악, 입금요청, 재입금 날짜 확인 방문관리 : 재입금일 미상환 시 방문, 상환독려, 보수적으로 상환유예의사 확인하여 상환계획과 현재 상황 보고서 작성
연체 2회	방문관리 : 연체 사유 정밀진단 후 경영컨설팅 필요여부 및 도덕적해이 여부 판단. 향후 조치계획 작성
연체 3회	방문관리 : 약정해지 안내, 상환 불가능한 상황 증빙 자료 제출 보고 후 특별심의 위원회를 통해 상환 유예 및 법적조치

## □ 채권확보를 위한 사전 대비

- 내부 심사 시스템을 통한 사업성 및 재무건전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
- 기한이익 상실요건 강화 : 대출 약정 시 기한이익 상실요건으로 대출 기업 내 배임, 횡령 또는 기소사실이 있는 등 기타 법인 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환 문제에 대한 초기 대응

## □ 대출 후 관리

### ○ 비정기적 사후 관리 실시

-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기업 간 상생 가능성 검토
- 구매연계, 업체온라인홍보, 각종 행사 참여 유도 등 지원방법 모색
- 당사자 기업 소속 협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관리

### ○ 경영지원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용자기업 대상이므로 비금융서비스로 경영컨설팅, 정부와 경남도와 해당 시군의 정책 자금 연계 지원 등을 제공
- 기업의 인사, 노무, 회계, 홍보, 마케팅, 시장조사 등 전반적인 종합 컨설팅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원함.

### ○ 재무평가 및 재무컨설팅 실시

- 연 1회 대출 이후 재무현황을 파악
- 대출 이후 재무상태 변화 내용을 평가하고 대출에 대한 효과성 검증
- 필요 또는 요청 시 재무건전성 진단을 통해 연체가능성 조기 파악 및 재무컨설팅 실시 - 경남의 중앙정부 중간지원 조직들과 협력
- 4개의 협의체와 협력하여 교육과 컨설팅 등 진행
- 재무컨설팅 실시 한 기업에 대해 「붙임3. 재무컨설팅 보고서」작성 및 기업 공유

### ○ 조직관리 컨설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의사 결정 구조에 있어서 민주적인 곳이 많은데 참여자들은 민주적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더구나 민주적 의사 결정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왜곡된 경우들이 있음. 민주적 의사 결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컨설팅.
- 민주적 운영과 경영에 대한 갈등 해소가 매우 중요함. 이에 대한 조직 진단, 구성원들의 관계 그리고 직책, 역할에 따른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컨설팅

- 총회, 감사, 이사회, 대표 등 각 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례 연구 등.

□ 기타 첨부자료

- 08.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서
- 09. 상환조건변경신청서
- 99. 대위변제신청서
- 99. 상환완료증명서

-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장 재 혁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

-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



# -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코자 함

### I 추진 배경

-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정책\*\*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업수 및 고용·매출규모 등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중간지원 기관 등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일자리위원관계부처 합동, '17. 10),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18.11.)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수 : ('17년) 803개 → ('19년) 1,125개

-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금융조달은 필수적이거나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음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측정 및 계량화 곤란
  - 보조금·출자금은 자기자본 인정 불가, 발생이윤은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경제기업의 65%에 피해발생, 향후 금융수요 증가 예상

### II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및 수요

#### □ 자금조달 실정\*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주로 출자금 및 보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
  - 출자금(72.8%) > 보조금(14.6%) > 금융기관(5.0%) > 특수관계인 차입(1.4%), 기타(6.2%)
- 상당수 사회적경제기업이 일반금융을 통한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
  - 기타(76.1%(대출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음)) > 협동조합 금융기관(11.1%) > 일반은행(8.5%) > 비영리 단체(5.0%)

\* 경남연구원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유선조사('20. 2. 10. ~ 2. 28.) : 357개 대상

## □ 자금수요 및 규모

- 주요용도 : 인건비 등 운영자금(57.9%)과 시설자금(16.5%)
- 필요자금 : 주로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자금
- 평균 자금수요 : 9,456만원 정도(기업당), 총 자금수요 : 500억원 내외 추정

## Ⅲ 조례 개요

- 조례명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용도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투자·융자·보증 지원
  - 사회적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
- 조성액 : 15,000백만원(5년간) ※3,000백만원/연간
- 조성재원 : 도 일반회계 전출금 등
- 주요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융자 지원 등
- 운용방법 : 도 직영(수행기관 선정 기금운용)
- 상정(예정) : 2020년 6월 정례회

## Ⅳ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의 필요성

### □ 사회적금융 인프라 구축 필요

- 일반 금융기관은 기업의 재무성과를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나, 사회적경제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성과는 측정이 어려우므로 일반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은 쉽지 않음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설립 초기 경영지원 등에 집중되어 성장단계에 맞는 사회적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나 전무한 실정임

## □ 기업 직접지원에 따른 자생력 약화 ⇒ 융자지원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정부의 사회적경제지원정책에 따라 기업수, 고용인원, 매출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보조금 방식에 의한 직접지원 의존도는 높음
- 현재의 보조금 방식에 의한 지원은 관 의존도를 높여 자발적 수익 창출 및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개발을 저해함은 물론, 기업의 자생력 또한 약화시키고 있음
  -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기간 완료 후 사업적기업 인증율은 30% 정도에 그침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금지원(융자방식)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 향상 도모 및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 지원

## □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도 재정부담 완화

- 우리 도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지원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각종 신규사업 추진 시 도비 과다 소요 예상
- 따라서,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여 기업 경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형식으로 지원하면 보조금 지원과 같이 일방적·수혜적 성격의 회수 불가능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 기업이 계획한 상환일정에 따라 도 세입으로 유입되는 원금 회수 가능한 예산으로 도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지속적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 가능

## □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제공

- 기금 융자 사업을 통해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 공급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조형 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마중물 제공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금융 확산 촉진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

**V****향후 계획**

-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상정 : '20. 6월
-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기본계획 수립 : '20. 7월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20. 하반기
- 기금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 : '20. 하반기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도의회) : '20. 하반기

붙임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경상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전

출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투자·융자·보증 지원
2. 사회적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3.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보유자금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 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처리가 필요하여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하 “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담당업무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관리) ① 도지사는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용자 및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용자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소재지, 대표자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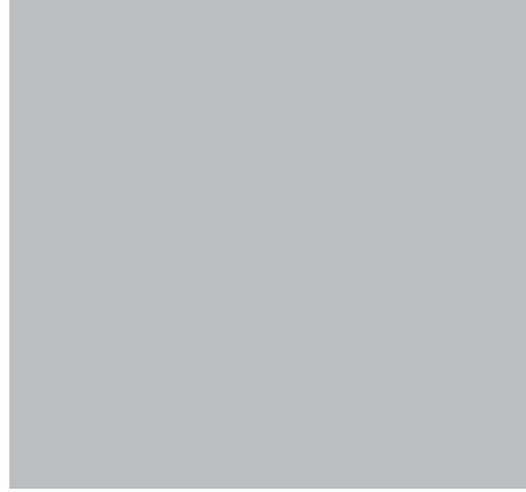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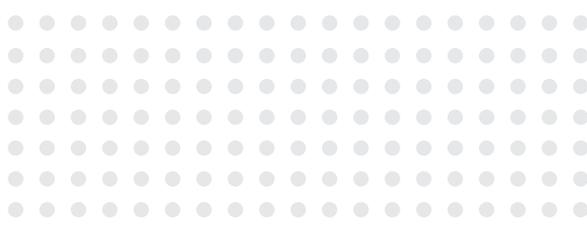
③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투론문

## 토론문 1)

###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공급의 역할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 구영민회장

경남의 사회적경제는 몇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경남의 사회적경제에서 2년전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가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경남마을기업협회, 경남협동조합협의회, 경남자활기업협회가 서로 협업하고자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전국에서 아마도 유일하게 온전한 4개 조직이 뭉쳐 만들어졌다.

이유는 열악한 사회적경제당사자 기업의 힘든 부분을 서로가 잘 아는 민간에서부터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사회적책임이나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하여 절대적인 것은 단단한 기업운영이다.

단단한 기업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매출증대가 우선시 될 것이다. 매출의 증대로 사회적책임 즉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라져가는 공동체복원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사회안전망에도 일조하는 것에 사회적경제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기업이 많이 생기고는 있지만 딱히 이런 전염병 사태의 일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힘든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제품개발, 기업운영혁신등 기업운영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재투자 과연 경남의 천이백여개의 기업중에 몇군데나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밖에 없다.

판매나 영업이 안되면 어떻게 할까?

즉 제품판매가 안되면 우리가 생산한 제품이 시장성에 경쟁력이 있는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하여 고객에게 인지가 안되어 있는지 모두가 해결해야될 숙제이다.

그러면 제품의 경쟁력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원료, 시설, 장비등 운영의 경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고자 하는 마음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도 현실적인 것은 재원이나 자금부족으로 뜻하지 않게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같이 가자고 동요를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자금벽에 부딪쳐 그 손마저 잡지를 못하는 기업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는 경남사회연대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을 작년

에 창립하여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이 겪고 있는 고민해결에 효과적인 대안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이후 경남사회가치금융 회사를 민간에서 주도하여 설립하며 최근 운영에 들어갔지만 민간에서 할수 있는 여력은 한계가 있다.

행정에서 예산 등을 확보하여 민간에서 만든 경남사회가치금융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보다 폭넓은 기업에게 적시적소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코로나19로 한층 더 운영이 힘든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한층 더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공급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혈하듯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제자리를 찾고 단단한 영업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에도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뚝 설 것입니다.

## 토론문 2)

### 경남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경남연구원 김유현

#### 1. 사회 잉여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을 위한 혁신적 방법, 사회적금융

고전적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금융시스템에서는 돈이 있는 곳으로 자원을 연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익창출을 유일한 원칙으로 하는 시장과 금융원리는 빈곤과 실업, 양극화와 불평등 확대, 사회적 배제,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확산시키고 있음에 많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혹여 이 같은 우려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곳에 사회가 가진 잉여자원 중 더 많은 부분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회가 가진 자원 중 더 많은 부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곳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 자원 배분의 전형적인 형태는 선한 마음과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발적 기부다. 그러나 자발적 기부를 늘리는 체계적인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확대하는 체계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사회적금융이 바로 그것이다. 사회적금융은 경제적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과 공익을 중시하는 금융활동으로, 사회의 잉여 자원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과 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연결하는 혁신적 금융활동이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더 나은 사회성과 (Social Impact)를 창출하고 사회적 자원배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적이고 시스템적 접근방법으로서 사회적금융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영국은 정부가 앞서서 대규모 도매기금인 큰사회기금(Big Society Capital) 조성을 지원하였고, 미국에서는 지역개발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e)에 대한 연방정부의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파이낸셜협회가 연대금융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은행의 국제연합이라 할 수 있는 국제가치은행연합(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에 가입하는 금융기관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2.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

사회적금융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에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성과를 창출함은 물론, 금융소외 문제 완화, 사회혁신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구현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에도 사회적금융의 가장 큰 역할이자, 사회적금융에 대해 기대하는 가장 큰 부분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성과와 함께 경제적 이윤을 충분히 창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어렵게 이윤을 창출하더라도 상당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출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 상 전통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이나 재단 등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은데,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융조달을 어렵게 하고 다시 외부지원 의존성을 높이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사회적금융은 이 같은 악순환을 깨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전통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것이 사회적금융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 3.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기금 조성

사회적금융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여전히 사회적금융 기반이 열악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미소금융의 사회적금융 대출 민간사업수행기관을 보면, 전체 10개 기관 중 9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sup>1)</sup>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현황을 보더라도 대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21개 중 14개가 수도권이며, 투자 중심 사회적금융중개기관 22개는 모두 수도권에 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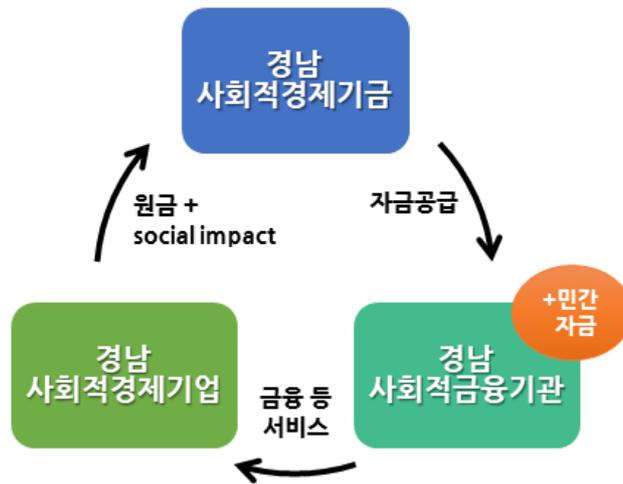
특히 경남은 인구와 경제(GRDP) 규모가 전국 대비 6.5%와 5.8% 수준이지만, 사회적기업은 4.6%, 협동조합은 4.3%로, 사회적경제가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에 투입될 수 있는 인적자본과 금융자본이 강력히 요구된다. 또 인적자본과 금융자본을 사회적경제로 연결하는 바탕이 되는 사회적자본이 갖추어져야 한다.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3대 자본의 조성을 촉진하는 것이 사회적금융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경남의 사회적경제금융기관은 작년에 출범한 (주)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가 유일하다. 경남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기반 확대가 절실하다.

사회적금융 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이다. 서울은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하여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40억 원의 사회가치벤처펀드를 지역 신협에 대여하여 융자사업을 실시하였고 65억 원의 부동산 자산화 융자 사업을 추진하였다.

1)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사회적금융 대출 민간사업수행기관(2018년 기준) : 신나는조합,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열매 나눔재단, (사)피피엘, (재)함께일하는재단, (재)한국사회투자,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동작신용협동조합,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이상 9개 서울 소재,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1개만 지방(제주)에 위치함

2) 대출중심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지역별 현황 : 서울 13, 인천 1, 부산 2, 광주 2, 충북 1, 경북 1, 제주 1  
투자중심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지역별 현황 : 서울 21, 경기 1

경남도 역시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속히 설치하여 당장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내자본 공급과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도매금융 방식의 기금운영을 통해 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과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경남 사회적경제기금이 민간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도모하면, 더 많은 민간자금이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융자되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이 갖춰짐으로써 사회적경제기금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 토론문 3)

## 당사자의 자발성과 공공의 혁신성이 협업하는 사회적금융의 성공 사례를 기대하며:

### “경남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금공급을 위한 포럼” 토론문

박종현(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뜻을 세우고 일을 도모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디어, 사람, 돈이 그것입니다. 일이 맨 시작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려면 돈, 특히 자본이 있어야 하며, 그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구현해 성과를 내는 데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일 듯 싶고, 우리 경남의 사회적경제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돈’ 또는 ‘자본’일 듯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결과물로 구체화되었고, 앞으로 어떤 청사진을 세우고 있는지를 많은 분들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저는 우리 도민들이 자랑스러워할 경상남도판 ‘그라민은행’, 경상남도판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DFI Fund)’의 가능성을 예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라민은행은 방글라데시 농촌 여성들의 자발성을 유도해 융자금의 회수 가능성도 높이고 빈곤층의 경제적 처지도 개선하는 데 성공한, 마이크로크레딧의 선구자였습니다. 미국 재무성이 조성·운용한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은 정부가 일반예산으로 조성한 자금을 낙후지역의 금융기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지역문제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공공기금입니다. 이들은 전세계의 포용적 경제, 지속가능발전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의 애로요인과 관련해 금융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금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도 그 흐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발성과 진정성입니다. 정부에 지원금이나 융자자금을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사회적경제 현장의 당사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자조금융기관을 만들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만, 오늘 소개된 사업계획서의 구체성과 설득력은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의 진정성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사업가·활동가·리더로만 알고 있었던 분들이 금융과 관련해서도 깊은 내공을 보여주신 셈입니다.

특히, 제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금 구상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청사진들이 금융의 교과서에 나올 법한 ‘정공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다는 점입니다. 사

회적금융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원천의 자본이 각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면서 서로 보완을 해주고, 이러한 생산적인 협업을 통해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설계를 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경남사회적가치금융대부의 구상에는 이러한 역할 분담 및 연계가 잘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론적 이야기를 아주 조금만 드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조성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자본을 제공하는 사회적 투자자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 투자자는 **당사자투자자·공공투자자·자선투자자·영리투자자·시민투자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에 대한 자금제공을 통해 기대하는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수익 그리고 이러한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나름의 판단에 근거해 사회적금융의 공급주체로 참여하는데, **투자 목적·기대 이익·위험 감내도가 다 다릅니다.** **당사자투자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참여하는 당사자들로, 이들이 사업상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키기 위해 자조자금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향후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위해서도 먼저 요구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투자자**는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대규모기금을 조성해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며 촉매자본을 제공하고 법·제도 인프라도 마련합니다. 민간 공익재단으로 대표되는 **자선투자자**는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공공투자자와 더불어 손실을 감수하며 촉매자본 및 초기 자본 등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민투자자**는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면서 금전적 자본 제공을 통해 그 활동에 동참하거나 후원하려는 투자자들입니다. 높은 금전적 수익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높은 위험까지 감내하지는 못하는 사람들로써, 이들의 투자가 본격화될 수만 있다면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투자자들입니다. **영리투자자**는 시장금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며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낮은 기대수익과 높은 예상위험으로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지만, 일단 유입이 가능할 경우 사회적경제 분야의 자금조성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투자자들이기도 합니다.

사회적금융이 발걸음을 떼고 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당사자투자자와 공공투자자의 역할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먼저 당사자들이 자신의 돈을 걸었을 때, 공공도 이 판에 함께 할 명분을 얻고 운명공동체가 됩니다. 이 점에서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가 당사자자금을 먼저 마련해 놓고, 이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와의 긴밀히 협의하며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상남도가 공공투자자가 되어 사회적경제기금을 주도적으로 조성하고, 이렇게 확보된 자금을 경상남도의 사회적금융기관들에게 그들 자금의 매칭을 조건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사회적경제 프로젝트에 투·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도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자본을 확보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사회적경

제기금이 이러한 투·융자 과정에서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후순위자본, 인내자본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여타 투자자들의 위험을 낮춰주거나 보다 높은 수익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시민투자자나 영리투자자들의 참여도 독려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발표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제3조 ‘기금의 조성’과 관련해 핵심 재원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임을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지방정부에서 사회적경제기금 조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기대만큼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는데, 지속적인 자원확보의 불안정성·불확실성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반면 미국의 CDFI 기금이 1994년 설립 이래 흔들림 없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데는 그 기금의 확보가 일반회계에 있음을 법에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일반회계의 전출금 조항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의 진정성을 보이는 신호임과 동시에 행정 혁신의 일환이라고 높게 평가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를 마련하는데 다음과 같은 점들도 같이 고려된다면, 사회적경제기금이 사회적금융 생태계 발전과정에서 그 역할을 보다 잘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제 3조 ‘기금의 조성’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밖의 수입금을 서울시의 경우와 같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으로 바꾸고, 당사자자금, 금융기관 사회공헌자금, 자선자금 등도 사회적경제기금에 출연을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으로 제시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의 기본구도는 자본은 공공이 대고, 운용은 민간의 사회적경제 금융기관들이 하는 형태의 민관협업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민관협업에 더해 돈 내는 데도 민과 관이 같이 참여하고,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받고 책임지는 데도 같이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당사자나 민간의 여타 주체들도 기금의 조성 주체로 같이 참여한다면, 사회적경제기금을 일반예산으로 확보하는 점을 경남도민들에게 더 잘 설명드릴 수 있고 기금 운용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나 대리인문제를 줄이고 책임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제13조 ‘기금의 관리’에 “지원금 상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이 촉진자본, 인내자본, 손실 감수자본(first-loss capital)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려면, 도 의회의 결산·심의 등의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손실은 허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근거를 조례나 규칙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서울시의 개정 조례와 같이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업비 지원”을 포함하고, 제13조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이 기금을 위탁·운용하는 사회적금융기관의 비용부

담 부분의 보전 및 가치 창출 부분의 보상에 대한 조치가 명시화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보여준 혁신성과 전문성의 기풍을 지속하면서, 현재의 청사진을 뚜벅뚜벅 실천에 옮겨간다면, 당사자의 자발성 및 공공의 혁신성에 기반한 협업형 사회적금융의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되고, 전세계에도 귀감이 될 것이라고 소망해봅니다.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문 4)

### 경남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 공급 포럼 토론문

비플러스 이보연

#### 1. 경남 사회적경제기금과 사회적금융기관의 발전방향

현재 사회적금융 시장의 자금 공급은 대부분 정부 정책에 의한 자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책보증 대출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한 대출이 있고, 그 외에 지역별로 지자체 기금 등을 통해서도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문턱이 높고 과도한 서류와 담보와 신용 요구<sup>3)</sup>로 인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금이 운영 중인 한 자금지급의 규모나 운영기관들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충분한 자금 공급이 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의 움직임과 경남사회가치금융의 설립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기금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조달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 중심의 사회적금융기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금융을 위해서는 기금 운영 중 발행하는 **부실(손실) 처리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타 지자체 사례에서 보듯이, 대손처리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기금이 운영 될 경우, 손실 처리 부담을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에서 지게 된다. 이는 기금 운영을 보수적으로 하는 유인이 되어 자금 수요자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만족할 만큼 자금이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참고로 19년 10월에 제정된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적경제기금 조례<sup>4)</sup>에 기금 손실액에 대한 책임을 도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참고해 반영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2.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지역 중심 사회적금융

비플러스가 운영하고 있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P2P대출)** 사업 모델은 지역 중심의 사회적금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가 직접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와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여 투자한다. 때문에 해당 기업을 통해

3) 2016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자금수요조사 및 정책자금 평가 연구

4)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99>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 뿐만아니라 기업의 서비스 혹은 제품을 실제로 이용하는 고객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자금을 조달하려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실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자금조달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 시흥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사업을 진행하는 빌드(주)가 대표적인 사례다. 신규 공간 마련을 위한 커뮤니티 펀딩을 진행하며 비플러스 평균 수익률(8%) 보다 다소 낮은 수익률(연 2%)로 펀딩을 진행하였다. 대신 이자와 함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투자금액의 7%)을 제공하여 투자자가 직접 빌드의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모집에 성공한 기업에 지자체 기금 등을 매칭해서 추가 대출을 실행하거나, 시민 투자자에게 돌아갈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다양한 정책자금, CSR 자금과의 협업도 가능하다. 비플러스에서는 도매금융(지자체 기금, 비영리기관 기금 등)과 매칭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대기업 CSR 자금 등을 활용해 참여 기업에 이자 및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사회적금융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의 사업이 가능하며, 특히 기금 등을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투자금과 함께 집행 될 수 있다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좋은 자금조달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밀착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 - 경남모델과 고려사항

- 장 지 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지역금융

- 1990년대 이후 확대되어 온 지방분권으로의 흐름 속에 지역경제 중심 성장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되어 왔고<sup>5)</sup>,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시스템 붕괴 위기를 겪으며 지역경제의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음
-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야 한다는 지향 속에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을 공들여 추진해 왔고, 금번 코로나 위기에서 고용유지 선언과 함께 지역 사회 기부·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지역금융 시스템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독일이나 일본처럼 분권이 확대된 국가일수록 지역에 기반한 금융시스템이 발전<sup>6)</sup>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지출 중심의 지역정책은 조세수입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움 ⇒ 도 차원에서 기금조성을 통해 재정투입이 선순환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런 구상이 기대한 방향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민관이 서로가 갖는 제약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밝히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 경남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모델

- (소액대출로 출발) 경남사회가치금융은 제도권 금융이나 수도권 중심의 사회적금융 공급체계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소액대출(microcredit) 방식으로 자금공급을 시작할 계획
- (사회적경제 전용기금 중개) 소액대출을 위한 재원은 출자금, 구성원으로부터의 차입금, 지자체·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전용기금과 민간 도매기금 용자(또는 위탁)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조직이 보유하고 통제할 수 있

5) 구분성(2019), 지역중심 성장모델 강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6) 김은경 외(2017), 지역 기반 관계금융생태계 구축 방안, 경기연구원

## 는 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시민참여 기반 마련) 특히, P2P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의 구체적인 수요에 부응하는 자금이 시민펀딩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조달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경남사회가치금융이 P2P금융기관으로 성장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음
- (관계금융 지향) 경남지역 사회적금융 생태계 참여자를 포괄하는 거버넌스로 출발하고, 연합회 추천기능 부여 및 자조기금 조성을 통해 관계금융의 특성을 살려갈 계획
- (가치를 부가한 금융) 대출을 컨설팅과 연계함으로써 자금투입의 효과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으로, 단순한 자금공급 이상의 역할을 하는 금융(value added capital)이라는 사회적금융의 지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

## □ 고려사항

- (대손처리 체계) 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손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생태계 조성 초기단계에 자체 자금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손에 대한 분담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작동할 수 없는 모델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
  - ' 19.10월 제정된 충남 사회적경제 기금 조례는 기금 용도에 투융자 손식액을 포함시켜 일정수준의 대손을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
  - 5개년 계획에 따라 생태계 조성 단계에 부합하는 손실부담 기준 마련 검토 필요 (ex. 미소금융 수준)
- (전문인력 양성) 간혹 사회적금융 대출을 제공하면서도 자금을 대한 신청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보조금 지원체계와 유사하게 위원회 중심으로 작동시키는 경우도 관찰됨. 기관 내 체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나 과도기적 단계로 인식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
  - 경남과기대 협력 통해 인재풀 형성,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방안 함께 검토
- (정보의 수집과 관리) 자금의 허브가 되는 것 못지 않게, 자금의 흐름과 관련한 정보의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 기관 자체적으로 또한 조달한 자금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도 기업의 현황과 성과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며 평가하는 체계 필요
  - 신용보증기금에서 사회적경제 영역과 소통해 개발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 ' 20.4월 사용 개시되었으므로 활용방안 함께 검토